

〈'26~'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(안)〉

- ☐ 「평화경제특구법」 제8조,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26~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○일
통일부·국토교통부 장관

- ☐ 지정 규모 : '26 ~ '27년 총 4개 내외

- ☐ 제출자 : 인천광역시, 경기도지사, 강원특별자치도지사

* 공동 지정 요청 가능

- ☐ 제출 서류 :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(붙임1) 및 개발계획

※ 개발계획 제출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,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포함시
국토교통부 사전협의 필요(관련 증빙서류 첨부)

※ 「평화경제특구법」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
협의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필요시 관련 자료 포함

- ☐ 제출 기한

○ 1차 : '26. 9. 1.(화) ~ '26. 9. 30.(수)

○ 2차 : '27. 8. 2.(월) ~ '27. 8. 31.(화)

※ '26년내 1차 지정, '27년내 2차 지정 계획, 사정 변경시 일정 조정 가능

※ 1차 지정 탈락 시 2차 신청 가능

- ☐ 제출 방법 : 신청 공문(전자문서)

- ☐ 제출처 :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

□ 평가 방법

-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로 구성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적정성 평가 →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

※ 붙임2. 평화경제특구 평가 기준 참조

□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

구 분	주 요 내 용
지정 계획 공고	▷ 지정 규모, 제출 서류 등 안내 (인천광역시·경기도·강원특별자치도 공문 발송)
↓	
지자체 대상 설명회	▷ 지자체협의회 개최, 지정 계획 설명 및 질의·응답
↓	
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(안) 작성	▷ 시·도지사 작성 * 산업단지 포함시,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필요
↓	
지정신청서 접수 (1차: '26.9.1. ~ 9.30) (2차: '27.8.2. ~ 8.31)	▷ 공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서(개발계획) 제출
↓	
예비 검토	▷ 통일부·국토교통부(특구법 제10조의 사항 포함 여부 등)
↓	
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	▷ 통일부·국토교통부 장관 →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* △기후에너지환경부(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) △행정안전부(재해영향성 검토)△해양수산부(해양공간 적합성) △국토교통부(연계교통 대책) △농림축산식품부(농지) 등
↓	
평가단 평가	▷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 종합
↓	
시·도지사 의견 청취	▷ 지정 신청한 시·도지사의 의견 청취(특구법 제8조 제4호)
↓	
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	▷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의·의결
↓	
평화경제특구 지정	▷ 통일부·국토교통부 장관 지정·고시

※ 필요시,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및 평가단 평가를 동시 진행

□ 개발계획 포함 내용

□ 평화경제특구법 제10조

1. 평화경제특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2.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
3.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
4.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(이하 “단위개발사업지구”라 한다)의 명칭·위치·면적
5. 개발사업의 시행방법(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)
6. 자원 조달방법
7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
8.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
9. 교통처리계획
10. 산업유치계획
11. 보건의료·교육·복지시설 설치계획
12. 환경계획
13. 내·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
14.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, 관광자원개발계획,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(다만,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)
1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□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8조

1. 사업비
2. 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
3.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
4.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

□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

1.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기능을 수행하는 평화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평화용지를 5%이상 포함

- 붙임 1.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(양식)
2. 평화경제특구 평가 기준

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				
자치단체명				
사업 담당	소속	직급	성명	전화번호
	OO실·국장			
	OO과장			
	담당자			
신 청 내 용				
특구명칭	0000 평화경제특구			
특구위치				
특구면적				
개발계획	세부내용 요약			
「평화경제특구법」 제8조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. 2026년 00월 00일 신 청 기 관 : 신 청 인 : (인) 통일부·국토교통부 장관 귀하				

00000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

2026년 00월 00일

○ ○ ○ ○ ○[시 · 도지사]

※ 각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목차·양식을 변경하는 작성 가능

목 차(안)

I. 개요

1. 추진 배경 및 목적 00
2.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 00
3.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00
4. 추진 체계 및 경과 00

II. 현황 및 지정요건

1. 해당 지역 현황 00
2. 지정요건 충족 증빙 및 확인 00
3. 주민 의견 청취 결과 00

III. ○○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

1. 평화경제특구 개요 00
(명칭·위치·면적, 지정 필요성, 사업비, 시행예정자, 시행방법 등)
2. 평화경제특구 재원조달 방안 00
3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00
(평화용지 조성 현황 포함)
4.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00
5. 교통처리계획 00
6. 산업유치계획 00
7. 보건의료·교육·복지시설 설치계획 00
8. 환경계획 00
9. 내·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00
10. 관광자원 개발·진흥 계획(관광특구) 00
11. 개발사업과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00
12.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00
13.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 관리 계획 00

IV. 기대효과 및 결론

1. 기대효과 00
2. 결론 00

붙임 2
평화경제특구 평가 기준

평가항목	세부지표	배점	평가요소
평화경제 특구 기본계획 부합성 <35점>	목적의 부합성	15	·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목표 부합도 · 북한이 설치한 경제(관광)특별구역과의 연계 가능성 · 지역의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 발전전략 및 단계별 경험 추진 계획의 정책기여도
	지정 필요성	15	·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해당 지역을 개발할 필요성(균형발전 핵심 지표 등을 평가에 반영)
	평화용지	5	· 평화용지 조성 면적 비율(비율에 따른 점수 차등화)
내·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<25점>	국내외 투자유치 현황	15	· 신청 지역의 최근 국내외 체결된 투자 규모 · 既 남북협력 참여 기업의 평화경제특구 참여(투자) 계획 및 체결된 투자 규모 ·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업의 수요 · 외국인 투자자의 남북 경제협력 관심 및 의향
	투자여건	10	· 교육, 상업, 의료, 문화시설 등 내·외국인 정주여건 · 외국인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· 물류·유통 등 연관 서비스 산업 여건 · 인력 수급 역량 및 연구·혁신 기반(대학, R&D 기관) · 국내 연계성: 타 특구(평화경제특구 포함) 및 연관·상위 계획과의 연계성
개발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<20점>	개발계획의 적정성	15	· 부지 확보 및 토지개발 여건(개발제한, 주민수용성 등) ·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계획의 타당성 ·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의 타당성 · 특구 개발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 · 특구 개발의 상위 국가개발계획(기반시설, 경험 등) 및 통일정책과의 정합성 · 전략환경영향평가 혹은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수행 여부 및 평가 결과
	기반시설 확보	5	· 기반시설(도로·전력·상하수도·물류거점 등) 확보 방안의 구체성 · 연계 인프라 자원(국가·지방 등) 확보의 확정·진행단계 · 교통 처리계획, 환경보전 계획 등의 적정성
개발 경제성 <20점>	시행자 등의 적격성	10	· (예비)시행자 선정의 적정성 · (예비)시행자의 유사 개발경험 · 개발사업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· 시행자 등의 자금조달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 ·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담조직의 역량
	사업방식 적정성	10	· 평화경제특구 개발방식의 적정성 · 총사업비와 토지조성비용 등의 적정성 · 개발이익의 적정성 및 초과이익 환수계획의 적정성 · 지자체 자체 투자 인센티브, 규제완화 계획 · 자원조달 구조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 · 개발 완료 후 관리계획의 적정성